

# 예산총칙

2020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63,784,489	22,913,535
일반회계	674,269,852	20,228,096
특별회계	89,514,637	2,685,439
공기업특별회계	58,978,359	1,769,351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42,215,873	1,266,476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6,762,486	502,875
기타특별회계	30,536,278	916,088
주택사업특별회계	45,374	1,361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567,143	47,014
농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6,815,035	204,451
자활기금특별회계	1,518,009	45,540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5,599,956	167,999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456,420	43,693
수질개선특별회계	6,140,017	184,201
도시개발특별회계	326,659	9,800
농어촌뉴타운특별회계	937,580	28,127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6,105,451	183,16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4,634	739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6,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321억원으로 한다.

제 8 조 다음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무활동경비    3.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4.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제 9 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전액 보조금, 특별교부세, 재정인센티브, 특정목적기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